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일시 | 2024. 11. 15.(금) 14:00 ~ 17:00

장소 | 동신대학교 동강홀

주최  교육부 주관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교원대학교

후원  경북대학교  동신대학교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개편’ 주제로 열리는 권역별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UN 아동권리 협약, OECD ECEC 등 국제 사회에서도 모든 영유아에게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영유아의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고, 지난 6월 27일부터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고 통합하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교원이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교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 직무역량을 고려해 영유아의 발달적·경험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유아교육 및 보육학계, 교원양성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시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토론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 축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입니다.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교원 자격·양성 체제에 대한 다양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오늘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24년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듯이, 그동안 여러 연구팀의 고민들이 토론회를 통해 나누며 교원의 전문성 상향평준화라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응하는 방안에 다가가길 희망합니다.

OECD 교육 2030과 UNESCO의 2050 등 세계는 미래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원이 가진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교원자격과 양성체제는 미래를 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다루어질 영유아교사 양성전공 교육과정, 양성학과, 현직교사의 통합 자격 과정,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모두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결과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연구를 진행해 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님과 연구진, 그리고 고영미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아동학회 연구진, 한국교원대학교 김언경 교수님과 연구진 등 연구를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구진을 대표해서 발표를 맡아주신 임수진 교수님, 김대욱 교수님, 김유미 교수님, 김언경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시는 이미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발표만큼이나 토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과 학회, 단체를 대표해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연구팀이 제안한 개편 방안의 실효성은 물론 진정 미래 교원과 현직 교원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의 개편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행복을 위한 방안인지 논의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가 미래의 영유아교사와 교사들이 만나게 될 영유아의 웰빙과 건강한 성장에 성큼 다가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장 **황 옥 경**

» 목 차

주제발표

발표 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방안	1
발표 2.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17
발표 3.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27
발표 4. (가칭) 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35

지정토론

채영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호남대학교)	47
김정화 한국보육지원학회(목포대학교)	51
김석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창의유치원)	55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포일사과나무유치원)	63
김수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정분과)(다솜사랑어린이집)	69
김소희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아해뜰어린이집)	73
신경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부모대표)	77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방안

[발표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책임자: 고영미(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공동연구원: 이미정(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신혜원(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임수진(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지영(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목차

0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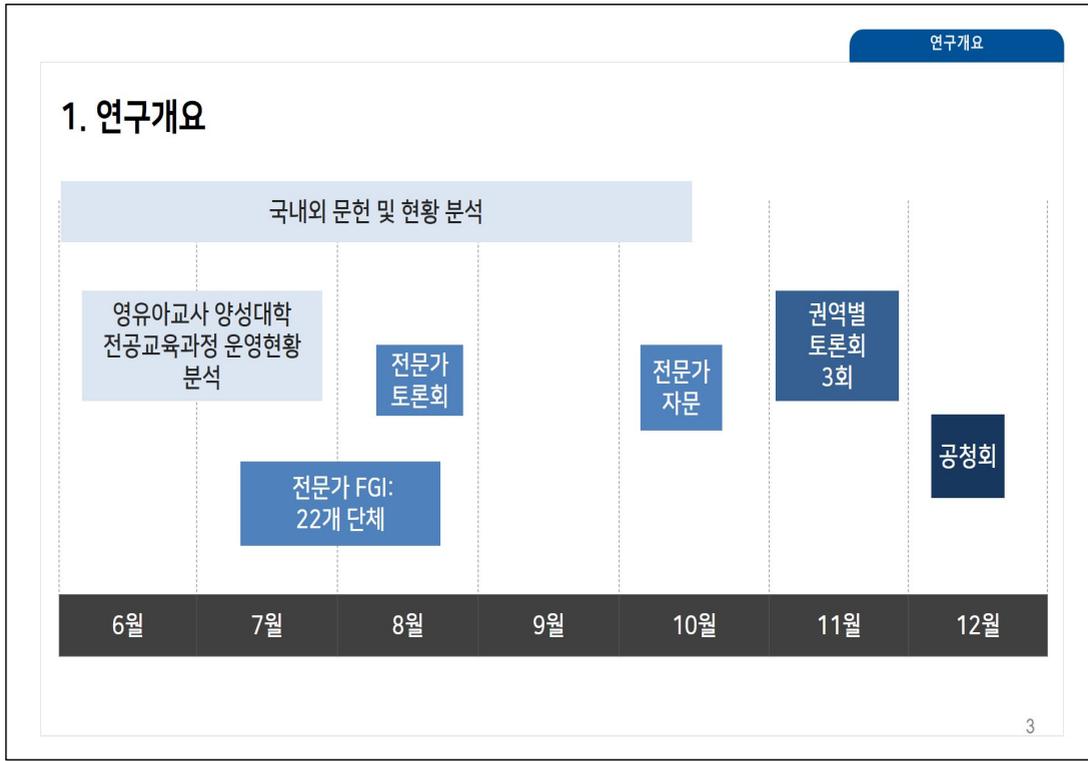
연구주제
연구진행 과정

02 영유아교사 통합자격과 전공 교육과정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03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04 시사점 및 향후과제



연구개요

◆ 영유아교원 양성대학의 전공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기본이수과목, 기타전공과목, 소단위 학위과정 분석

구분	분석대학 수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계
유아교육과	71	79	150
아동학과 및 보육학과	18	14	32
계	89	93	182

◆ 전문가 FGI: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22개 학회 15개, 교원단체 4개, 양성대학 협의회 3개 단체 대상
일시: 2024. 7. 22. - 8. 23
실시 횟수: 총 6회

◆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4. 8. 13. (화) 10:00-13:00
참석자: 토론회 8명(대학교수 및 현장전문가), 교육부 및 유관연구 참석자 7명, 연구진 6명

◆ 전문가 자문
일시: 2024. 10. 11. (금) 15:00-20:30
참석자: 전체 자문 7명(교수 2명, 장학관 1명, 보육행정전문가 1명, 연구원 1명, 현장전문가 2명)
교수 및 현장전문가 중심 영역별 자문(1영역 자문 6명, 2영역 자문 6명, 3영역 자문 7명)

4

2. 영유아교사 통합자격과 전공 교육과정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	--------------------------------------	---	---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 1 ^년 영유아정교사(0~5세) ▶ 2 ^년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2. 영유아교사 통합자격과 전공 교육과정

1)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 1 — 아동 이익 최우선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7; Shonkoff 외, 2021
 - 0-5세 시기의 발달은 연속적이며 영아기와 유아기의 신경 발달이 유기적으로 연결
 - 영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교육적 자극이 중요하며, 이 때 경험이 이후 학습·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
 - "돌봄(care)"을 생리적 보호(예: 식사, 수면, 안전)로 한정하기보다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윤리적 돌봄/ 영유아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은 구분되지 않음)
 -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일관성 있는 경험은 유아기에서 초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기에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가 충족되는데 기여하여 전이(transition) 측면에서 중요
- 2 — 교육제공의 형평성 Heckman 외 2013; UNICEF, 2019
 -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합된 시스템과 일관된 교사 자격체계는 이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
 - '모든' 교육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 모두가 질 높은 ECEC에 접근 가능 → 교육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1)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3 —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과 전문화 EuropeanCommission, 2014; OECD, 2019; Urban, Vandenbroeck 외, 2012

-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두 시기를 연결하는 교육적 지원 제공 및 연속적 발달 촉진
- 교사 전문성은 개별 교사의 역량 개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
- 동일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기준의 준수는 이 분야의 전문화 및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에 긍정적
-> 교사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함
- 최근 국내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유보통합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에 대한 통합을 우선 순위로 생각함

2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 22개 단체 중 18개 단체가 영유아정교사(0-5세)가 적합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지지함

-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임
- '0-5세 영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0-5세를 대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함

1)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0-2세 영아는 돌봄 중심 보육, 3-5세 유아는 교육"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바라보기

연령 기준으로 교사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돌봄과 교육이 서로 얽혀 작용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음
영유아 시기의 연속적인 발달과 경험의 특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통합교사 자격은 0-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한 전 생애 기초 교육의 관점에서 통합된 시스템 및 동일한 양성 요소와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 구분이 없는 단일화된 양성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영유아교사의 핵심 역량에 기초한 전공 교육과정은 예비교사가 지식 학습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영유아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이란 단순한 지식과 기능 이상으로, 특정 맥락에서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끌어내고 동원하여 여러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OECD, 2005)
 - 여러 도구들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 개념을 수용하면서 역량 개념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으로 정의함(OECD, 2018)
 - 지식(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기능(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 사회적·정서적 기능, 신체적·실천적 기능), 태도와 가치(개인적 태도와 가치, 지역적 태도와 가치, 사회적 태도와 가치, 글로벌적 태도와 가치)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2023년 영유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역량모델(교직 인성, 교육과정 운영, 영유아 이해 및 지원, 교육공동체협력, 디지털 소양, 현장연구 및 전문성)'과 같이 검증된 기준안에 대해 전문가협의회, 공개토론회, 자문회의를 통해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음

<핵심 역량(안)의 예시>

영역	내용
자기 관리역량	교직에 대한 신념, 민주시민 기초소양, 교직 윤리의식 실천, 자기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이해 및 실천역량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 교과내용의 이해 및 융합, 양질의 환경구성, 학급운영
학습자 이해 및 지원역량	영유아 인지·정서·신체 등 보편적 발달 이해, 영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 건강·영양·안전, 영유아 평가와 성장 지원, 상호작용, 긍정행동지도
관계역량	교육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 학부모·지역사회·교직원과의 협력적 관계,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양육자 협력 및 상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생태·다양성 존중,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 디지털 놀이, 디지털 윤리 준수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2023년 영유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역량모델(교직 인식, 교육과정 운영, 영유아 이해 및 지원, 교육공동체협력, 디지털 소양, 현장연구 및 전문성)' 과 같이 검증된 기존안에 대해 전문가협의회, 공개토론회, 자문회의를 통해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음

<핵심 역량(안)의 예시>

영역	내용
자기 관리 역량	교직에 대한 신념, 민주시민 기초 소양, 교직 윤리의식 실천, 자기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이해 및 실천 역량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 교과 내용의 이해 및 융합, 양질의 환경구성, 학급운영
학습자 이해 및 지원역량	영유아 인지·정서·신체 등 보편적 발달 이해, 영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 건강·영양·안전, 영유아 평가와 성장 지원, 상호작용, 긍정행동지도
관계역량	교육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 학부모·지역사회·교직원과의 협력적 관계,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양육자 협력 및 상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생태·다양성 존중,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 디지털 놀이, 디지털 윤리 준수

2)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유치원 교사 양성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고려한 영유아교사 전공 교육과정

한국의 유·초·중등교원 자격증은 무시험검정 기준에 의해 수여되며,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은 세부 사항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 에 기초함

- 제1조(목적)에서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규정됨을 명시함
-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는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에 따라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을 명시하며,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함

구분	전공과목	교직과목
이수학점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주요내용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별표					
전공 이수 과목	<p>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논리 및 논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p> <table border="1"> <tr> <td>유치원 정교사 (2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td> </tr> </table>	유치원 정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정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p>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p> <p>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p> <p>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p>	<p>[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p> <p>4. 유치원 교사(Kindergarten Teacher),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격종별</th> <th>관련학과 또는 학부</th> <th>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유치원 정교사 (2급)</td> <td>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td> <td>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 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 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 와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td> </tr> </tbody> </table>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 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 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 와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 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 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 와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별표									
교직 이수 과목	<p>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최저이수기준</th> </tr> <tr> <th>정교사 2급 기준</th> </tr> <tr> <td>교직이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td> </tr> <tr> <td>교직소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td> </tr> <tr> <td>교육실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td> </tr> </table>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 2급 기준	교직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 2급 기준											
교직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과목 명칭과 교육 과정 운영	<p>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p>										

- 유치원 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과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비교하면, 최소 취득학점은 유치원 교사 50학점 이상, 보육교사 51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할 전공교과목 수가 유사함
-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및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이수 체계를 보면, **교과목 표시 방법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의 '선택과목'을 제외하면, 교과목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보육교사 양성과정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 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교사 인성: 필수 2과목(6학점)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 교과재연구및지도법, 교과별교수법, 교과별교육과정, 교과별평가방법론 등	보육 지식과 기술: 13과목(39학점) 이상 필수 9과목 (27학점)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 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어린이집운영관리,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50학점 이상(10과목 이상) + 교직 22학점= 총 72학점	보육 실무: 필수 2과목(6학점)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양성대학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도록 운영하는 학과는 대체로 2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통 교과목을 중심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4년제 71개 대학																	
자격	전공과목명																
유치원 교사	유아교사론	아동권리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보육교사	보육교사인성론	아동복지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어린이집운영관리
개목 수	78(10)	71	80(11)	77(5)	79(7)	76(5)	71	72(1)	68	68	70(1)	71(1)	61	56	41	65	47
유치원 교사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부모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교사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개목 수	56	69(1)	70	70	30	7	14	48	1	28	1	1	3	1	7	0	

유아교육과 2-3년제 79개 대학																	
자격	전공과목명																
유치원 교사	유아교사론	아동권리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보육교사	보육교사인성론	아동복지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어린이집운영관리
개목 수	87(8)	75	80(4)	82(4)	85(6)	77(2)	79	79(1)	71	72(1)	80(3)	77(1)	65(1)	73(2)	32	71	50
유치원 교사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부모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교사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개목 수	64(2)	72(1)	78	71	21	5	4	40	0	29	3	2	5	1	4	1	

유치원 교사 양성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고려한 영유아교사 전공 교육과정

- 기존 연구는 현행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 핵심역량과 연계된 편성, 교직과 전공의 연계 및 중복 교과목 조정, 영유아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과목 및 교과영역의 설계,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유·보·초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국외 사례에서 영유아교육 담당을 교육부로 이관한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의 일원화에 기초한 높은 질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유아의 행복과 발달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유아교사와 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의 연계 강화 노력이 아동발달의 장기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제시함
- 최근 국가교육책임제(교육부, 2022)와 이음교육 강조 등은 0~18세까지 배움의 연속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기초함. 특히 통합교사는 '0-5세 영유아학교' 체제에 기초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교육체제 구축에 따라 현행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기준에 기초해 전공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함

선행연구 및 양성대학 전공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결과에 기초해 FGI,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논의된 전공교육과정 개편 관련 다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기본이수학점 과목 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교사양성체계의 기본(필수) 교과목 구성이 유사하므로, 영유아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점은 교육 부에서 관리하는 교원 자격 부여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기본이수학점 및 과목수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표시방식 역시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방식이 더 적합함 • 특히 기본이수과목 수는 변화하는 대학 환경을 고려해 양성대학이 효율성·유연성을 가지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상향 조정이 적절함
교과목명과 교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개발 및 교과목명은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과 지속성,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 기존 교사양성체계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편보다 기존에 제시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아와 유아를 위한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과목명은 영유아사회교육, 영유아놀이지도 등으로 표시하며, 현재 기본이수교과목 내에서 영아와 유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함 • 다만 통합교사 양성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영아이해 관련 교과목을 개발·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교과교육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학교급과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의 교과목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3.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유보통합의 본질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교육책임제에 기초함에 비추어,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개편(안)'은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같이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며, 이 과정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양성과정과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기본이수과목 유지
21학점(7과목) 이상 유지

- 유치원 교사 전공 교육과정(기본이수교과)과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필수교과는 대부분 공통임
- 대학의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학교 교사'로서의 자격체계 일관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에서 요구하는 기준 적용을 제안함

영유아를 포괄하는 형태로 과목명 변경
<영유아+교과목명> 형태로 변경 (예: 영유아사회교육)

- 영유아 발달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함
- 기본이수과목명은 현행 교과목명을 유지하되 유보통합의 취지를 고려해 <영유아+교과목명>으로 할 것을 제안함

3.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유보통합의 본질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교육책임제에 기초함에 비추어,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개편(안)'은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같이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며, 이 과정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양성과정과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영아 이해를 반영하는 교과목 편성 제안
예: 영유아발달과교육 1, 2/ 영유아관찰및지원 1, 2

- FGI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강조된 통합기관에서의 '영아 이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교과를 개발해 기본이수과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기본이수교과인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등을 기초로 영유아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과목 제시

교과교육학 영역의 조정
예: 통합교육의 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 2

- 영유아교육의 특수성인 '통합교육'을 반영해 교과목을 개발하고, 주요 내용을 교수요목에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교과 교육론",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을 <통합교육의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 2>와 같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개편(안): 교과목 구성의 '예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비고
영유아교육론,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언어교육, 영유아사회교육, 영유아과학교육, 영유아수학교육, 영유아미술교육, 영유아음악교육, 영유아교사론, 영유아동작교육, 영유아놀이지도, 영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영유아권리와 복지, 영유아건강교육, 부모 교육, 영유아안전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 1, 영유아발달과교육 2, 영유아관찰및실습 1, 영유아관찰및실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 구분 없이 구성할 것을 제안 <영유아+교과목>으로 제안 영아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를 위해 기존 교과목을 변경 제시하는 안을 제안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통합교육의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 영유아교수학습방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교육'을 반영해 교과목을 개발하고, 주요 내용을 교수요목에 제시할 것을 제안
기타 교과목(21학점) 이상	
양성대학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대학 자율 편성 운영 대학 자율로 소단위 학위과정(MD) 편성 가능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1 양성기관 자율성에 기초한 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 제시 및 지원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양성대학 학과(2-4년제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타 교과목으로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현황을 확인함

영유아 교사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해 교사 양성대학의 자율적·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 통합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현직교사 통합교사 자격취득 과정과의 연계 필요

현직교원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함**

생애주기에 기초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연계성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충분한 연구 필요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등과 연계되며 영유아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양성기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영유아 교육환경 및 유보통합을 고려한 교원양성평가 지표 개발이 요구됨

4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통합교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학부터 우수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사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5 장기적 관점에서 교과목명에 대한 충분한 논의·합의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목명은 예시이므로 유보통합 및 영유아 통합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교과목 및 교과목명이 적합한지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함

25

감사합니다

26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발표2]



2024. 영유아교원 양성과정 개선 권역별 토론회 발제 원고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연구책임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김대욱(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신나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소정(육아정책연구소)

CONTENTS

- 01 학과 명칭
- 02 수업연한
- 03 영유아교원 추계에 따른 증원
- 0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시 우려되는 점
-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01 학과 명칭

가. 통합학과 명칭: 영유아교육(학)과

1) 통합학과 명칭

사범대학 소속: 영유아교육과

사범계열 소속: 영유아교육학과

성격: 0~5세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2) 통합학과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영유아교육(학)과는 모든 정원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3) 통합학과 전환 대상

현재 유아교육(학)과와 보육교사 양성학과

가능한 최대한 영유아교육(학)과로 많이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독려

해당 학과 교원의 세부전공이 영유아교육 절반 이상(유아교육전공, 아동학전공 모두 해당) +

전환 희망하는 학과

01 학과 명칭

나. 전공 명칭: 영유아교직이수(아동관련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

1) 영유아교직이수 운영 검토

아동관련학과에 영유아교직이수 운영

아동관련학과를 전공제 방식의 전공으로 운영

'아동관련전공' 과 '영유아교직이수' 로 운영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

2) 영유아교직이수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검토

영유아교직이수는 일부 정원에 통합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검토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01 학과 명칭

다. 교육대학원 명칭

1)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는 영유아교육(학)과 소속 교원 or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소속 교원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있을 때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두고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없을 때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2)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있을 때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두고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없을 때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02 수업연한

가.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

1) 수업연한에 대한 부모 의견

부모들은 4년제 대학 교사양성 학과를 가장 선호함(77.1%/ 복수응답, N=1,000)

〈표 II-1-1〉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 교사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기관(복수응답)

단위: %, (명)

	4년제 대학 교사 양성 학과	전문대 교사 양성 학과	4년제/ 전문대 자격 취득 학점 이수	사이버 대학 교사 양성 학과	방송통 신대학 교사 양성 학과	온라인 학점은행 (평생교 육원 포함)	보육 교사 교육원	사례수
전체	77.1	42.9	18.3	7.7	11.1	5.5	8.3	(1000)
유치원부모	89.6	30.6	10.4	2.6	5.8	1.6	3.6	(500)
어린이집부모	64.6	55.2	26.2	12.8	16.4	9.4	13.0	(500)
영아 부모	67.5	52.4	21.8	11.5	13.9	8.3	9.1	(252)
유아 부모	80.3	39.7	17.1	6.4	10.2	4.5	8.0	(748)

출처: 김은설, 문무경, 구자연, 권정윤, 이미정, 박소영, 김수현(2023).

02 수업연한

가.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

2) 수업연한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23년 7월 24일 10개 전문가 단체의 유아교육과 보육 교원 분야 전문가 의견 포럼 개최

자격기준으로 적정 수업 연한 4년으로 제안한 단체가 다수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에서 4년제 학과개편 방안 동의

전체적으로, 교사 양성에서 4년제 대학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02 수업연한

나. 4년제와 전문대의 수업연한

1)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영유아교직이수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의 수업연한은 모두 4년 이상으로 통일

무전공 2학년 입학생, 특별편입과정 3학년 편입생을 고려하여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

2)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통일

3)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5차 학기 이상으로 기존 교육대학원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구성

02 수업연한

다. 전문대학 영유아교육학과를 4년제로 상향

1)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4년으로 상향

가) 간호학과 모델 적용

(1) 고등교육법의 전문대 간호학과 모델 적용: 2~3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4년제 운영 모델 검토 후 적용

(2)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와 심화전공 운영 사례: 심화전공 운영하여 4년제 가능, 아동관련학과 지원 필요

(3) 전문대 영유아교육학과 교직 과목 운영: 인근 대학 교직과정 학점교류 수강, 교내 간호학과 등 교직과정 공동 운영

2)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정원 유지, 증원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이 4년 상향됨에 따라 교원 추가 확보 필요

2~3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될 때 학과 소속 중 학생수를 줄이지 않고 전환, 증원하는 방향 검토

03 영유아교사 추계에 따른 증원

가. 특별교원양성과정과 특별편입과정 운영

나. 지역별 수요에 따른 영유아교사 증원

0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시 우려되는 점

- 가.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 및 정원 감원
- 나. 영유아교육(학)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의 입시경쟁력 부족 현상, 사범대 총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 제외 필요
- 다. 지역수요에 적절한 영유아교사 양성의 필요성
- 라. 부족한 수도권 영유아교사 양성규모
- 마.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 바. 대규모 정원의 영유아교육(학)과 개설
- 사.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우려
- 아.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가. 영유아교육과 사범대 총 정원제 제외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를 제외하여 정원 조정 필요

사범대 영유아교육과의 사범대 안에서 발전방향 모색

나. 1대학 1캠퍼스 1단과대학 통합학과 원칙

동일 대학 안에서 영유아교육(학)과가 같은 캠퍼스와 단과대학에 배치

사범대학이 있으면 사범대학에, 없으면 같은 단과대학에 배치 원칙

사범대 총 정원제 제외하여 통합 학과로 조정, 글로벌 사업 등으로 이후 통합되는 학교와 학과에 이 기준 적용

다. 2개 이상 학과의 영유아교육(학)과 통합

2027년부터 영유아교사 양성하려는 학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전승인 실시

대학에 2개 이상 영유아교사 양성 관련 학과가 있으면 통합이 적절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라. 대규모 영유아교육(학)과 운영

통합 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금 제공이 필요, 재정지원이 필요 (예) 글로벌 대학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분반 기준 마련: 25명(6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 전공 평가 기준), 충분한 수의 교수 증원 필요

특별편입과정 운영 시 분반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 고려

마. 영유아교육(학)과 입학시 무전공 제외

영유아교육(학)과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처럼 사범대학(사범계열)로 입학시 제외

영유아교직이수 운영하는 아동관련학과는 개별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무전공 운영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바. 특별편입과정 운영

2029년부터 특별편입과정 편입생이 졸업하여 통합 영유아교사로 배출, 2026년부터 특별편입과정 선발

특별편입과정 선발 인원은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정원의 50% 이내 대학 자율 결정

사. 영유아교직이수 교원자격 수여 비율 조정

1안. 폐지	2안. 현행 10% 이내 유지	3안. 30% 이내 부여	4안. 50% 이내 부여
--------	------------------	---------------	---------------

아. 교육대학원 증원

재교육과정의 정원을 양성과정 정원으로 이동, 교원 추계에 따라 증원 검토.

수도권정비계획법 검토하면서 증원방식 결정

자. 대면중심 교육 강화

비대면교육 일부 or 전면 실시 양성과정은 대면교육 비율을 대폭 상향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차. 영유아교원교육센터 운영: 영유아교육(학)과 지원 방안

학부 영유아교육(학)과 설치 &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모두 운영할 때, 센터 지원(영유아교육(학)과 운영)

센터장: 영유아교육(학)과 교수 겸직, 조교 1명 별도 배치

지역 내 영유아교원 재교육 및 승급 과정 지원

영유아교원 연수 관련 업무 증가 예상되므로 업무담당자 추가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

카.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 과정 증원

학사학위 이상 전문성 갖춘 영유아교사 양성 위해 일부 대학 일부 정원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세계최고 영유아교원 전문성과 지역사회 맞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5년 학석사연계 과정 일부 도입

감사합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발표3]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연구책임자: 고영미(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공동연구원: 이미정(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신혜원(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임수진(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지영(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2024)의 주요 내용

- 통합교사의 자격: 1안) 0-5세 영유아교사
2안)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양성과정 :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선택
-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 10년 유예기간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2026 교원역량개발지원제 시행 교원의 자기 역량 진단 신설(가안)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10.2)

[자기역량진단 예시]

- 시·디지털 역량
- 혁신적 교수법 활용
- 학부모 소통
- 동료교원 협력
- 지속적 자기 개발
-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교원 전문성 기준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역량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지표 개발 예정('25-'26)
-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향후 통합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향으로 참고함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통합교사 자격 개편(안)

현행	개편(안)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有)	<table border="1"> <tr> <td>자격 신청</td> <td rowspan="3">통합 교사 자격 취득</td> </tr> <tr> <td>특별교원양성과정^① 또는</td> </tr> <tr> <td>대학원) 신면입 과정^② 중선택</td> </tr> </table>	자격 신청	통합 교사 자격 취득	특별교원양성과정 ^① 또는	대학원) 신면입 과정 ^② 중선택
자격 신청		통합 교사 자격 취득			
특별교원양성과정 ^① 또는					
대학원) 신면입 과정 ^② 중선택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無)					
유치원교사 자격(無), 보육교사 자격(有)					

<출처> 교육부(2024).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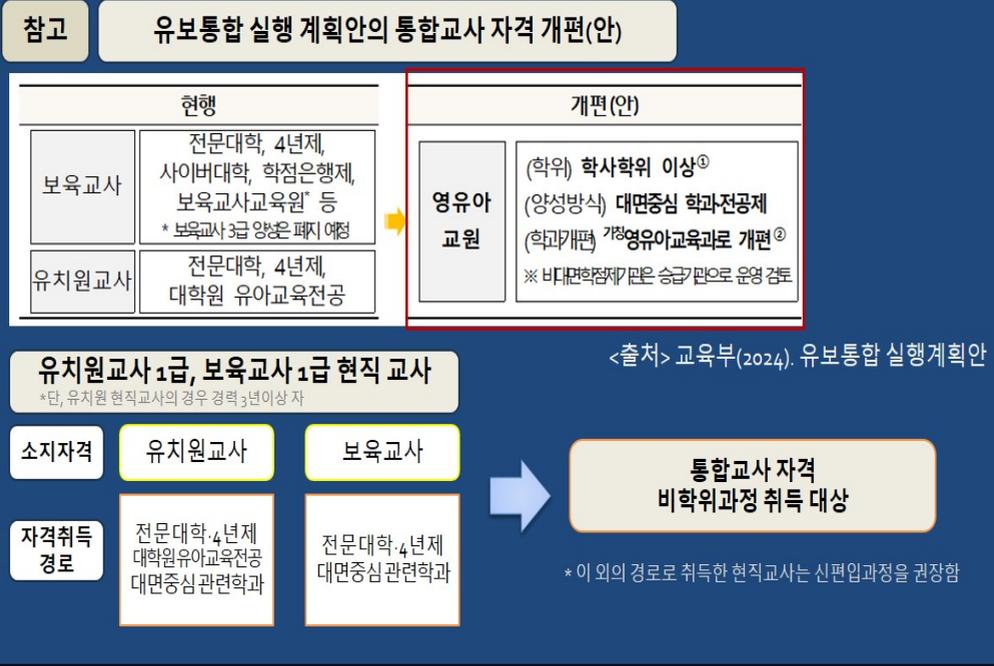
- 복수 자격 소지자 : 통합교사자격 신청 후 자격취득
- 단수 자격 소지자 중 통합교사 자격취득 대상 : 학위과정 or 비학위과정 중 선택

유치원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현직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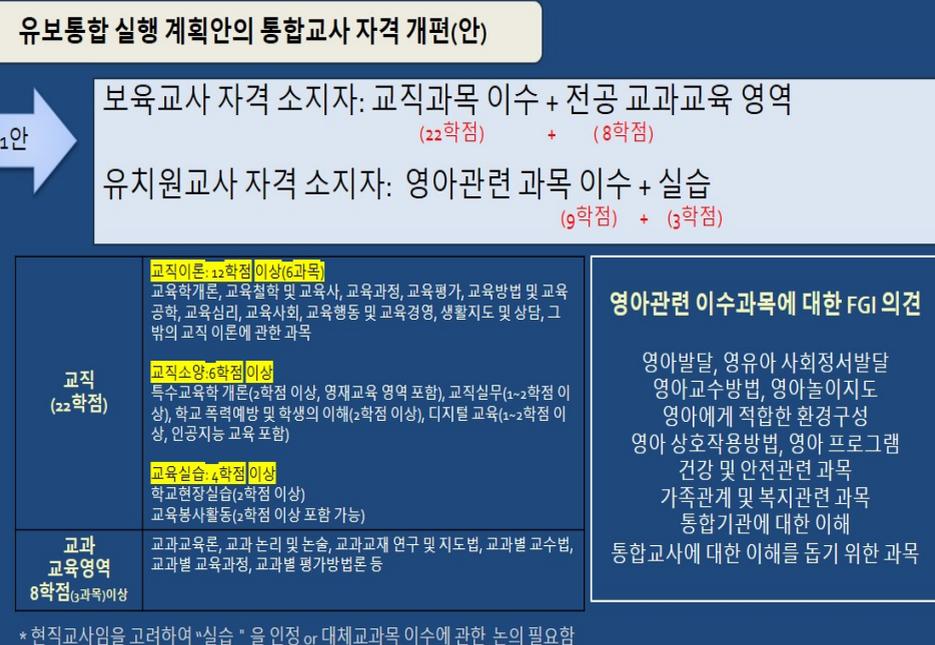
* 비학위과정은 현직교사의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단, 유치원 현직교사의 경우 경력 3년이상 자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대상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1안)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2안)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통합교사 자격 개편(안)

2안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교직과목 이수
(22학점)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 영아관련 전공과목 이수 + 실습
(9학점) + (3학점)

교직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동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 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영아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FGI 의견

영아발달,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영아교수방법, 영아놀이지도
영아에게 적합한 환경구성
영아 상호작용방법, 영아 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관련 과목
가족관계 및 복지관련 과목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
통합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

* 현직교사임을 고려하여 "실습" 을 인정 or 대체교과목 이수 논의 필요함

논의사항

-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사 양성과정 비학위과정을 운영할 기관 선정의 기준이 중요함
- 현직교사의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하도록 대체 교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통합교사 자격의 취득 후, 영아반 담임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영아 교사 직무 교육 등 통합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 확충이 필요함
- 복수자격 소지자(유치원교사 &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자격연수과정 등을 통해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논의사항

- 통합교사 자격취득과정을 통한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교육과정 변경 및 전환을 위하여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학과)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감사합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가칭)영유아 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발표4]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연구

(가칭) 영유아 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연구진: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언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서윤희(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순배(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목 차

- I. 연구 배경
- II. 통합기관 원장(감)의 역량
- III.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 IV. 제언

I. 연구 배경

❖ 유보통합 추진, 0-5세 대상으로 한 통합기관 체계 마련

-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 양질의 차별 없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

❖ 통합기관 원장(감)의 전문적 역량 발달시킬 자격과정 구성 필요

- 통합기관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합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원장(감)의 역할수행 요구
- 통합 원장(감)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역량 중심의 전문성 강화 요구

➢ 이를 위해, 통합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며 (가칭) 영유아 학교 운영 역량을 강화시킬
전문적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요구

I.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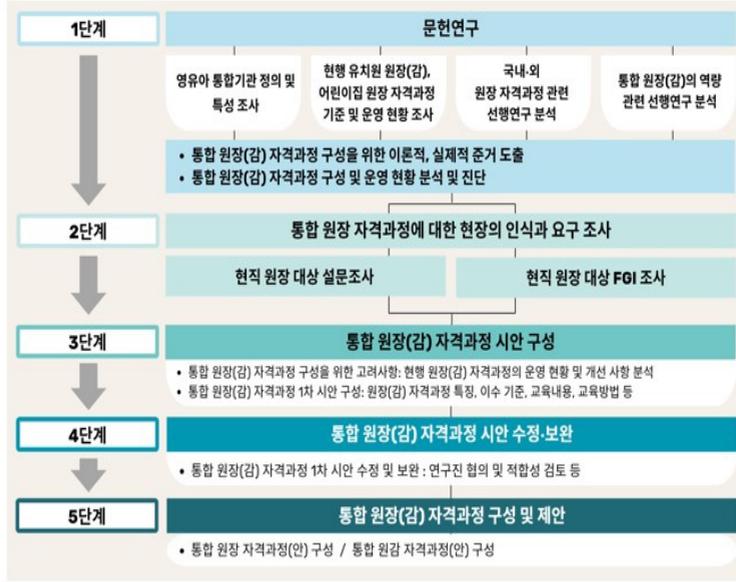
❖ 연구의 필요성

- 통합기관은 0-5세 영유아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통합적 교육, 보육 실천을 목적으로 함
- 통합기관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을 운영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원장(감) 필요
- 현재 원장(감) 자격과정은 교육, 보육의 이원화 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자격과정의 이수 기준 및 운영 상이
- 통합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신규 및 현직 원장(감) 자격과정을 구성·운영하도록 보완 필요

- ❖ 연구 목적
 - 현재 시행 원장(감) 자격과정 현황을 탐색하고,
 - 통합기관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통합 원장(감)의 자격과정을 제안하고자 함

I. 연구 배경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통합기관 원장(감)의 역량

❖ 원장의 역량

-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기관 운영 제반을 관리하는 교육적·경영적 역량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인성, 소양 및 조직문화 구축을 유지하는 리더십 역량
- 원장의 인성, 소양에 따른 성찰과 리더십 **기본 역량**과 교육기획 등 전문지식과 기술, 조직 인사관리, 기관 경영 **전문 역량**
- 이외 교육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 원감의 역량

- 원장과 교사 간 중간관리자 역할 및 원장 직무 보좌 수행이 필요
- 중간관리자, 지도자 교사 등 원감의 역할과 역량을 행정, 평등, 성찰적 리더 및 경영 관리와 협력적 관계 구축
- 성찰, 리더십 **기본 역량**과 교무운영, 교육지원, 업무 조정 및 갈등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경영 **전문 역량**

Ⅲ.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1.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 ❖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의 특성 및 자격과정 구성을 위한 운영 현황 분석
- ❖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을 위한 개선 사항 분석
 - 직급 체계와 자격 취득 기준의 개선 사항
 - 일원화된 통합기관 교원 직급 체계 마련 필요
 - 통합기관의 원장(감) 자격 취득의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원장(감) 자격과정의 개선 사항
 - 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체계 마련 필요
 - 통합 원장(감)으로서의 직무를 지원하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필요
 - 현행 원장(감) 자격과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반영을 위한 개선 사항
 - 원장(감) 자격과정 내 반복적인 필수무교육, 중복되는 직무교육은 교과목 구성에서 제외하여 매년 별도 이수 제한
 -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연계한 원장(감) 자격과정 제한

2. 통합 원장 자격과정 구성 제안

❖ 통합 원장 자격 취득 대상

- (신규) 통합 원감 자격 취득자
- (현직) 유치원 원장 및 일반 어린이집 원장
 - 유치원 원장 :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경력, 9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유치원 교원 자격 소지자, 교육부장관 인정) 후 기관 임용예정 및 원장 자격연수 25일, 180시간 이상 이수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경력,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 후 원장 사전직무교육 10일, 80시간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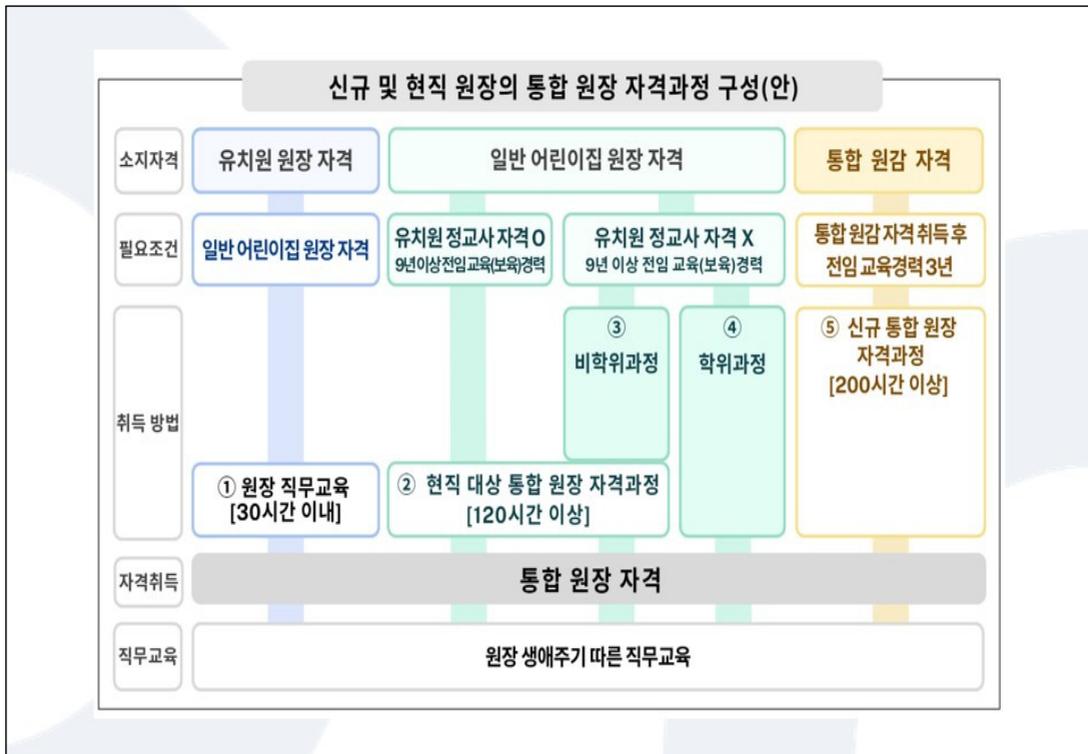
[참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원장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11조의2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7조 (자격의 검정) [별표기] '보수교육 실시기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 원장, 원감 자격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2. 통합 원장 자격과정 구성 제안

❖ 통합 원장 자격과정의 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통합 원장 자격과정				통합 원장 직무교육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신규		현직 일반 어린이집 원장		현직 유치원 원장	기본 역량	전문 역량
	기간	이수시간	기간	이수시간	이수시간		
통합 원장	25일 이상	200시간 이상	15일 이상	120시간 이상	30시간 내외	30~50%	50~70%



3. 통합 원감 자격과정 구성 제안

❖ 통합 원감 자격 취득 대상

• (신규) 1급 통합교사 자격 취득자

• (현직) 유치원 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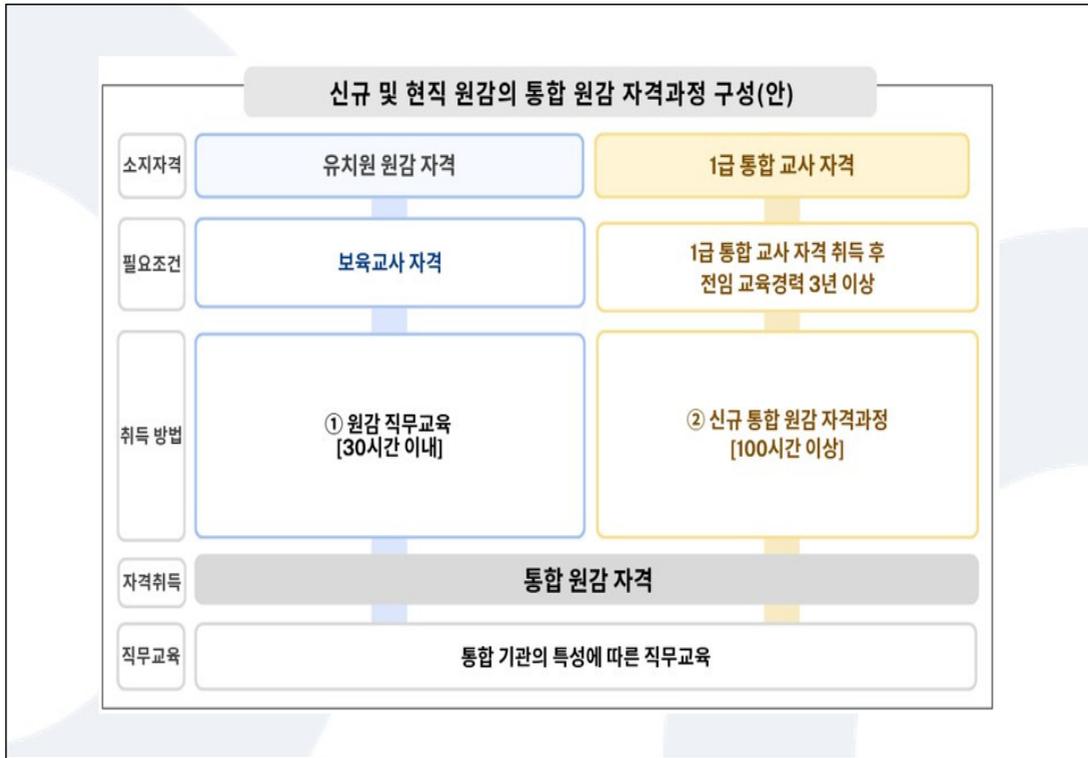
- 유치원 원감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경력 및 원감자격연수 15일, 90시간 이상 이수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교육경력 및 원감자격연수 15일, 90시간 이상 이수

[참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 원장, 원감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3. 통합 원감 자격과정 구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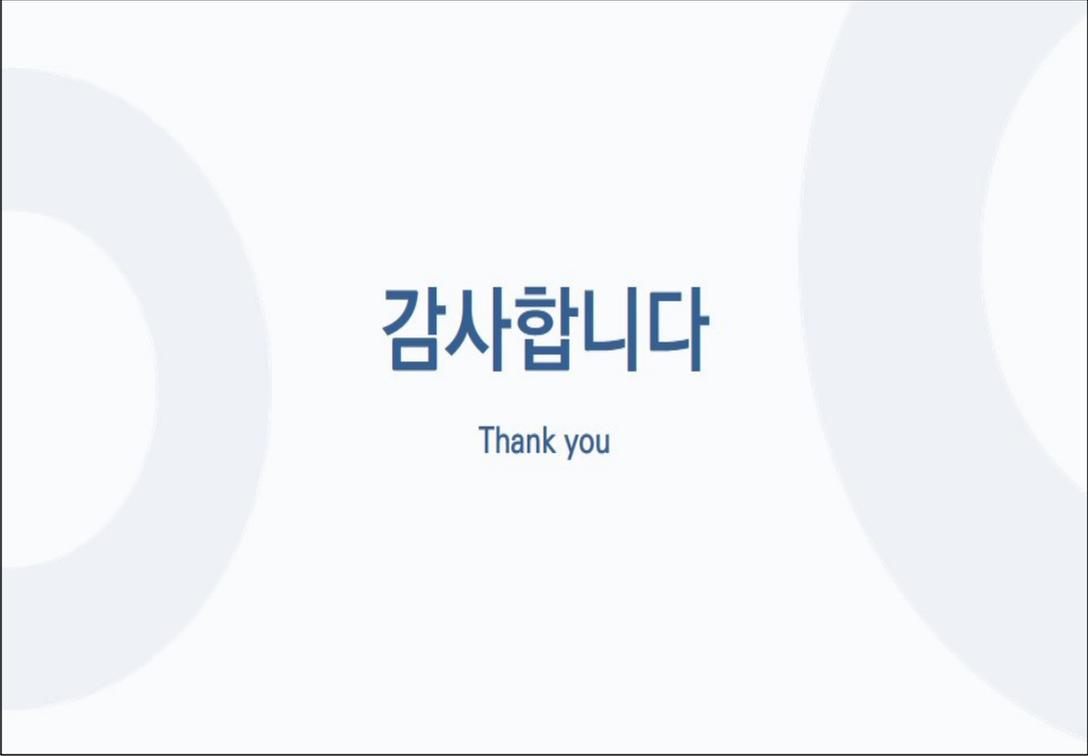
❖ 통합 원감 자격과정의 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통합 원감 자격과정		통합 원감 직무교육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신규		현직 유치원 원감	기본 역량	전문 역량
	기간	이수시간	이수시간		
원감	15일 이상	100시간 이상	30시간 내외	30~50%	50~70%



제언

- 통합기관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자격과정 지향
- 통합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반영하여 구성
- 현직 대상 원장(감) 자격과정의 유연한 운영 제안
-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연계한 원장(감) 자격과정 운영 제안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지정토론

채영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호남대학교)

김정화 한국보육지원학회(목포대학교)

김석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창의유치원)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포일사과나무유치원)

김수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정분과)(다솜사랑어린이집)

김소희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아해뜰어린이집)

신경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부모대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토의

채영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호남대학교)

정부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 시스템구현 등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보통합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구축이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유보통합의 5대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과 ‘통합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개선 등’,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및 ‘설립·운영기준 마련’이다. 유보통합은 하나의 통합된 틀을 구축하여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천하고, 학부모의 수요와 요구에 적합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요구에 따라 영유아들이 1일 12시간(기본운영시간 8시간, 맞춤형 돌봄 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이용에 있어 중요한 변인은 영유아교사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안인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과 개편 방안’과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 및 학과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과정’, ‘(가칭)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토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과 개편 방안에서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에 대한 통합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는바 일 것이다. 여러 단체와 전문가 토론에서도 영유아정교사(0-5세)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일원화된 체계에서 영유아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서 돌봄과 교육의 경계는 모호하고 성장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상황에 따라 돌봄과 교육이 혼용되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된 시스템과 동일한 양성 조건으로 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교육체제 구축에 따라 현행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기준에 기초하여 전공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통합된 시스템과 일관된 교사 자격체계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실행에 중요한 변인으로 교육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가 영아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교사양성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행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양성 교과를 살펴보면 교과목이 매우 유사하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영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영아 관련 전공교과에 대한 수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에는 반드시 영아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고,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 다른 학교급에서는 교과목별로 전공이 있기 때문에 교과교육학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경우 각 교과별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은 유아를 영유아로 변경하는 형식을 넘어 실제 교과내용의 구성에 영아 관련 내용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과교육 영역의 교과목 변경에서 통합교육을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교수요목에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안하고 있는 교과교육 과목 영역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하다.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의 기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복수 자격 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공 50학점에서 기본이수과목(21학점), 교과교육영역(8학점이상)을 제외하고 21학점을 양성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대학 자율로 소단위 학위과정 편성을 가능하게 한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교사 양성에 기본이 되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통합영유아교사 양성과정과 함께 경력이 단절된 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질 관리 방안에 차원에서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 및 학과 개편 방안에서 통합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과로 변경하고, 4년의 학업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며, 현재 유아교육과나 보육

교사 양성학과가 교원의 세부전공 기준에 적합할 경우 통합학과로 전환하는 것도 통합된 교원양성 체제에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동관련 학과에서 영유아교직이수 또는 전공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반면 아동관련 학과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의무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원양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의 적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과정(안)에서는 영유아 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합교사는 영유아 정교사(0~5세) 단일 자격 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통합교사는 0-5세의 연령별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한 특성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영유아 학교(가칭)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교사들은 각 연령의 담임을 순환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영아와 유아의 구분 없는 단일화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교사 양성체제에서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추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을 제안하고 있다. 통합 영유아 교사를 신규양성에서는 4년의 학과제로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또한 단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는 교직과목(22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전공 교과교육(8학점이상) 영역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 자격만을 소지한 교사가 영아 관련 과목 9학점 이수와 3학점의 실습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교과과정은 영아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영아 관련 과목은 6학점 정도 이수하게 하고 현직 교사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또한 다른 대처방안을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 교사 양성과정에서 비학위과정을 운영할 경우 기관 선정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현재 유아교육과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의 양성기관으로서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심도있게 반영해야 한다. 반면 관련학과에서 정원의 일정비율로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사양성기관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통합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깊게 공감한다. 이러한 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도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원장 자격과정 구성에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 비학위 과정에서 교직 22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장 경력이 9년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실습과 관련한(4학점) 교과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원감 자격 취득 대상에서 1급 통합 교사 자격 취득자와 현직 유치원 원감이다. 1급 통합교사 자격 취득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2급 자격과 교사 경력 3년 이상이고 일정 연수를 이수하면, 1정 정교사, 1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통합 교사 자격 취득자가 통합원감 자격 취득대상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영유아 교사들의 경력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 총 경력이 9년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 원감 자격 신청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문

김정화 한국보육지원학회(목포대학교)

영유아 중심의 협력적 논의를 바라며..

유보통합 정책 결정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양성과 자격 체계 그리고 학과개편 등에 대한 연구들이 완료되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통합된 영유아 교육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보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정되지 못한 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과나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려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합의된 의견이 나오길 바랍니다.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과 개편에 대해서

영유아교사의 통합자격은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0-5세 영유아교사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의 유아교육·보육(ECEC) 환경은 교육과 보육을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OECD, 2015).¹⁾ 따라서 앞으로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이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교육될 수 있도록 교사의 양성 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 유아교육과의 교원양성체계를 기반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존 유아교사 양성체계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교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공교과목은

1) OECD. (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233515-en>.

명칭과 내용에서 영유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교원자격 부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반영한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적절한 개선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 이수과목이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기존 보육교사 양성의 필수과목이 13과목, 39학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부분입니다. 비록 기타교과목 이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의 필수 학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 및 학과개편 방안에 대해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학)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며, 교사양성을 위한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제안하면서, 영유아교사 양성을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연구진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유보통합 정책 결정 이전에 발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을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등 진입요건을 강화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²⁾ 이 계획이 유보통합으로 인해 좀 더 상향화된 기준에 맞춰 빠르게 개편되면서 통합된 교육의 질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비대면 강의는 심층적 강의 전달 및 상호작용의 문제 등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은영, 김길숙, 이연주, 2014)³⁾는 논의를 반영하여 통합학과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모두 대면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적합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통합과정에서 영유아교육학과로 전환이 어려워 영유아 교직이수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학과의 경우에, 유보통합 이전에는 보육교사자격이 100% 부여되었던 점과 영유아교

2)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3) 김은영, 김길숙, 이연주(2014). 유치원과어린이집 교사자격 및 양성관련 체제 분석. 연구보고 2014-18. 육아정책연구소

사 양성을 위한 학점 이수(교직과목 포함)를 전제로 학과운영을 일정 부분 허용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유아 교직 이수 정원은 기본 교과목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과의 정원에 따라 최대 5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질의 영유아교사양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는 추후 교원양성과정 평가를 통해서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과정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교사들에게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격을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 전환과정은 현재 유치원정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영유아교사로서 요구되는 자격은 현재의 자격이나 역할수행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1안과 2안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보육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 영유아교사로서의 교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교직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영유아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학부수준의 모든 과목을 모두 요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직과목 이수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교직 22학점 중 교육실습 4학점은 보육교사 자격취득 시 완료한 6주간 실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만 있는 경우, 유아와 관련된 교육과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유아교사로서의 자격 전환을 위해 영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영아 관련 과목 이수와 영아 관련 실습이 필요하다는 연구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시된 실습 3학점에 대해서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 시 진행된 4주간의 실습을 인정하고 추가 2주간의 영아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들이 자격전환을 위해 추가교육을 받는 동안 영유아 지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직의 우수한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며, 영유아에게 연속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칭)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취득 과정 구성에 대해서

영유아학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원장과 원감 직에 대한 통합자격체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일반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유치원 원장은 30시간 직무교육을 받으면 통합원장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어린이집 원장 중 유치원 정교사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원장 자격과정을 통해 15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없는 일반어린이집 원장자격은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으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정교사 자격 유무가 대상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직교사에게 요구되는 과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지만, 교사와 원장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원장으로의 자격 전환 시에는 통합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현직원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과정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기존 어린이집에는 원감에 직위가 없었으나, 규모에 따라 원장의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서의 원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보육교직원의 직위체계 개선방안으로 원감 직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통합과정에서 영유아학교의 원감에 대한 자격취득 과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통합논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왔던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일한 양성체제로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토론회의 주제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김석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창의유치원)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 10년 유예기간

현 유치원2급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보면 10년 전부터 이미 보육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교사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육교사입니다.

교사 자격을 개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는 아마도 보육교사만 가지고 있는 교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사자격을 논할 때 4년제로 만든다거나 편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직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을 10년 유예한다는 것은 아예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통합교사학과인 영유아교육과가 생기고 편입을 받을 수 있는 2년 뒤에는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는 바로 편입이거나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른 생각일 것입니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통합교사 자격 개편(안)에서는

유치원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현직교사(단, 유치원 현직교사의 경력 3년이상인자)를 통합교사1급으로 한다는 것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승급 체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유치원교사자격증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자격이 있음). 이는 초,중등교사 자격에서의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안의 전공과목 이수자가 꼭 필요합니다. 교직과목만 이수 한다는 것은 핵심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사란 보육교사와 달리 영유아교사자격증을 받는 것이므로 유아교육의 전공교과교육 영역의 과목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초, 중등교사의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해야하는 기준과도 형평성이 있어 보입니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특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상임교과목	면허(자격)증	산업체현장실습
		전공과목	교직과목						
2016 학년도 2020 학년도	주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8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이상 ※ 다 220시간 ※ 2019년 1학기 ※ 2020년 1학기 ※ 2021년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사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증 	4주 (중등 공설에 관한 표시과목)
	부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학점 이상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이상 ※ 2019년 1학기 ※ 2020년 1학기 ※ 2021년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하의 양성 과정 1회 이상 2년 초과인 양성 과정 2회 이상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2021 학년도 이후	주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8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과교육과정(기본 교과 2과목 교과교육)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과교육영역에서 특수교과교육과정은 필수 이수 교과목 고시 제2015-81호 승론 및 별첨 3의 교과교육을 통과하여 대학별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교과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회 이상 (3년 이하의 양성 과정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사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증 	4주 (중등 공설에 관한 표시과목)
	부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학점 이상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이상 ※ 2019년 1학기 ※ 2020년 1학기 ※ 2021년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하의 양성 과정 1회 이상 2년 초과인 양성 과정 2회 이상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필수

통합원장 자격

김석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창의유치원)

유치원원장자격은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경력, 9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유치원 교원 자격 소지자, 교육부장관 인정)인데 보육 경력을 그대로 교육경력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교육경력은 교육청에서 인정한 경력을 말하며, 보육경력을 그대로 교육경력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원감 자격은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인 유치원정교사와 어린이집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증을 받고(비학위, 학위과정) 3년 교육경력 후 1급 통합교사가 되면 그 후 3년 후 원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이 되어야 신규 통합원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견은 없습니다.

원장자격 역시 비학위, 학위 과정을 통하여 통합유치원교사가 된 뒤 3년 교육경력, 1급 정교사 교육경력 3년, 원감경력 3년에 상당하는 경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사나 원감은 상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아 승급하는데 통합 원장 자격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경우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이 2급이라 할지라도 교육경력이 아니라 보육경력으로 직무연수만 통해 원장이 될 수 있고, 또한, 어린이집원장자격이 있고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없으면 비학위, 학위과정을 거쳐 2급 교사자격만 충족되면 원장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25.>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장·교감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5961호, '18. 12. 18.)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

1) 교장

학교별	자 격	교 장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기술 학 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초·중등학교 교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다. 9년 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다.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교감

학교별	자격	교 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고등기술 학 교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된다.

라. 유치원 원장·원감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17. 2. 8.)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자격 학교별	자 격 기 준
원 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원 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17. 2. 8.)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자격 학교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산업대학 포함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 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영유아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전문성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자.**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포일사과나무유치원)

불편함 1 - 편중된 토론회 참석 의미

무의식을 지배하는 단어의 힘 - 유보통합(0~2세, 3~5세/0~5세) 단어 동시 사용

유보통합에 대한 각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상들이 모두 다르고, 현장의 이해관계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단어 선택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 발표 이후 왜 모든 토론회에서는 '0~5세 통합'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육 현장은 '0~5세 통합', 유아교육 현장은 '0~2세, 3~5세 통합'을 주장해 오고 있다는 걸 이해 당사자들이라면 모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적어도 균형 잡힌 토론회라면 '유보통합(0~2세, 3~5세 / 0~5세)'을 같이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6.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통합 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역시 분명 1안-영유아정교사(0-5세), 2안-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적어도 이것이 공청회 성격을 띠고 있는 제대로 된 토론회라면 교원 자격·양성 개편에 관해서는 내용 모두 1안과 2안의 비율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관련 토론회 어디에도 균형이 잡힌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나만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일까?

전문가 FGI 22개 단체 중 18개 단체가 영유아정교사(0-5세)가 적합 - 다수결의 함정

본 토론회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관련 모든 토론회를 보면 대다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0~5세 통합을 기조로 모든 주장을 하고 있어 사람들을 다수결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즉, 상반된 의견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

며, 이번 토론회 역시 ‘0~5세 통합’을 전제로 교원양성체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수결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처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 보육계 종사자는 30만, 유아교육 종사자는 3만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이런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편파적인 토론회에 현장의 유치원 교사의 참여가 의미가 있나?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짜 맞추기식 토론으로 ‘그래도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대의적 명분을 쌓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피해의식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유보통합 관련 교원 단체들의 각종 설문 시 교육부의 소통 부족이 99%에 달하는 수치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불편함 2 -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이분법이고 분절적이라고 하는가?

‘0-2세는 돌봄 중심 보육, 3-5세는 유아는 교육. 이분법, 분절적 관념에서 탈피’ 에 대한 반박

기는 아이와 뛰는 아이, 한글을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의 개인 간 발달 격차가 어느 학교급보다 큰 곳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소아과학회(AAP),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CDC에서도 성장 차트는 어린 나이일수록 연령별이 아닌 개월 수로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심리학자 대다수는 영아기(0-2세)는 주로 감각 운동 발달, 신체 발달, 정서적 애착 형성 중심으로, 유아기(3-5세)는 언어, 사회성 발달과 인지적 탐구, 문제 해결 능력이 중심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02세, 35세의 구분은 이러한 발달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지 보육과 교육을 이분법으로 나누거나 상하 관계로 두자는 말이 절대 아니다.

‘연령 기준으로 교사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돌봄과 교육이 서로 얽혀 작용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간과한다.’ 에 대한 반박

돌봄과 교육이 서로 얽히는 유아교육의 본질은 결국 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기인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 현장 역시 ECEC 개념을 절대 간과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돌봄’이 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돌봄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교사의 차원이 아닌 기관의 시스템 접근으로 이야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교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수업 시간 내 돌봄과 수업 시간 외의 돌봄을 구분하고 별도의 인력 체제 정비를 요구하는 것이지, 단순히 단어로서의 돌봄과 교육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돌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불편함 3 - 30년간 달랐던 교원 양성체제. 우리의 합의는 충분한가?

현장 유치원 교사가 바라본 특별양성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1.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에 비해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취득경로가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음.
2. 2022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2년간 온라인 과정 등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의 특별양성체제 적용 문제
3. 2022년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출신 학과 현황은 유아교육과·아동학과·보육학과가 52%, 복지 관련 학과(가정·간호·식품·사회복지 등)는 33.7%, 그 외 기타가 14.3%.
 - 즉, 복지 및 기타 48% 자격증 소지자들의 특별양성체제 적용.

물론, 학과와 상관없이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을 모두 이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자격증 발급 학과는 어떠한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자격증은 압도적 비율로 교대 및 사범대 전공 학과 출신이며, 교직 이수 자격증 발급 학과 역시 논란의 여지 없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담당 과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유보통합을 통해 학교 체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전공 학과를 배제한 채 자격증만을 갖고 특별양성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건강하지 못한 서로의 생태계. 교사 자격은 서로의 교직 환경·문화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2024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취학률은 이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 유아교육 교사의 비중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유치원 생태계는 이미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보육계 생태계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교사 자격은 과연 결국 서로의 생태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교사들의 근무 여건은 전문성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30년간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서로 같은 또 다른 길을 걸어왔으며 그렇게 형성된 교직 문화의 차이도 엄청나다. 즉, 교원의 근무 시간 내 역할론에 대한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단순하게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수업 외 아침·저녁, 방학 중 돌봄, 통학 버스 운영 시 안전 담당, 유아 및 기관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 장학, CCTV, 교무, 연구, 안전, 보건, 정보, 영양, 각종 교무 행정 업무 등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미, 유치원 현장은 4세대 나이스 의무 사용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인해 각종 업무 처리의 부담은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4세대 나이스 같은 작은 것 하나도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 양성 체제부터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지금도 유치원은 국공립 단설과 병설, 사립유치원 간의 문화가 달라 현장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한 채 기관 통합을 통해 통합 교사 자격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서로의 교직 환경과 문화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논하는 것이 맞는가?

상대적 소수인 현장 유치원 교사의 제언. 공허한 외침이 아니길 바란다.

‘교육부·교육청의 정책들이 교문 앞에 멈춰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제도 개편에 있어 교육부가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증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곳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일까? 아니면 교육공동체들일까? 물론, 교육공동체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결국 정책 결정에 대한 혼란과 책임은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몫이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들은 본인

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현장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의 비율에 있어서는 현장의 교육공동체들의 비중을 뛰어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책들은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지속성이 없다. 즉, 숲만 조성한다고 나무들이 잘 크는 것이 아니며,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통합 교원 양성 제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고리타분한 단순 연수나 책자 보급 등의 정책 대신 보육·교육계 모두 만족할 만한 인력 체계 구성, 명확한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교원의 자격은 현재 2안으로 제시된 0-2세 영아정교사 및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여 영·유아 발달 차에 따른 전문성이 강화된 교사 자격 부여를 원칙으로 함.
2.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현직 교사의 0-2세 영아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 자격 취득은 원칙적으로 반대. 단, 대면 중심 전문대, 4년제 대면 중심 아동학과, 보육학과 졸업자에 한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 영·유아 교사의 자격 및 양성 과정 또한 타 학교급(초중등)과 동등한 자격 취득 요건 및 양성 과정을 갖추어야 할 것. 즉, 1년 과정의 보육교사 3급,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보육교사, 사이버대학교 졸업자, 유아교육·아동학과, 보육학과 이외의 학과 졸업자는 반드시 신·편입 과정을 통해 자격 획득.

3. ‘전공 과정’을 통한 자격증 발급은 폐지 후 ‘4년 학과제’로 자격증을 발급함.
4. 각 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교원 전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회계 및 종합 감사제, 교원 임금 교육청 관리, 임금 및 채용 부조리 적발 시 영구 퇴출 등 징벌적 제도 도입.
5. 초·중등 교육과의 수업 계열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른 주 20시간 미만의 적정 수업 시간 기준 마련.
6. ‘돌봄’의 정의를 수업 시간 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행위로 명시.
7.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용어 변경으로 별도 인력 체계 도입.

8. 교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심 외곽 지역, 농산어촌 등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단일 연령 원칙 하에 학급당 인원 기준 폐지 후 국공립 기관이 적극 담당.
9. '비담임 교과 담당 교사제' 법 개정을 통해 '교과' 개념 현장 도입으로 영유아교육 전문성 확보.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김수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정분과)(다솜사랑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영유아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며, 유치원교사였고,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복합적(?) 교사자격을 소지한 원장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발제자님의 영유아 교사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및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과정 구성안에 대한 발제문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발제문은 네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토론자가 발제문을 살펴보았을 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보통합에 있어서 교사 및 원장(감)의 자격취득과정과 양성기관의 양성학과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문 1)의 영유아교사 양성전공 교육과정과 개편 방안과 발제문 3)의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과정(안)의 발제문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양성 전공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어야, 현직의 교사들이 통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과정(재교육)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즉, 영유아교사 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과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함에 동의합니다.

유보통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유아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교육 제공의 형평성이 맞아야 함에 공감합니다. 스웨덴과 뉴질랜드 등 국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교사와 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의 연계 강화 노력이 아동발달의 장기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통합교사는 '0~5세 영유아학교' 체제에 기초한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유아기에 발달에 맞는 전공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통합교사자격 취득과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없었던 영아발달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교육과정의 과목명에 '영유아'라는 타이틀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단,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른 통합교사의 자격안은 심사숙고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현직의 보육교사들은 지금까지 0~5세를 교육해왔는데, 느닷없이 2안)인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자격이 나누어진다면 심각한 교사 수급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기간에 10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할 것이며, 교사처우에 지장 없이, 영유아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제문의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자격과정구성안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이수 과목 학점차가 많이 납니다. 발제문 1) 영유아교사 양성전공 교육과정과 개편 방안에 나와 있듯이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전공 이수 과목은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자격 구성안에서는 보육교사가 2배 이상의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들 또한 유치원 교사들처럼 50학점 이상의 학점 이수 후 교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재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는 영아교육 관련 재교육과정을 지원하면 됩니다.

발제문 3)의 현직 교사의 이수 과목 & 이수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 유치원 교사들의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에 형평성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제문 2)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및 학과 개편 방안에 동의합니다.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한 학교에 2학과가 존재한다면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양성기관을 4년제 대학 또는 4년제 전문대학의 영유아교육(학) 학과개편이 이루어져 통일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통합교사가 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수업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원 추가 확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발제문 4) (가칭)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과정 구성에서 통합기관 원장(감)의 전문적 역량을 발달시킬 자격과정 구성이 필요함에 동의합니다. 통합기관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므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원장(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통합 원장(감)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직 어린이집 원장 & 유치원 원장의 통합원장 자격 과정 구성이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직의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장은 현재 기준에 근거하여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원장 자격취득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유보통합 후의 “통합원장 자격취득 방법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원장 자격취득 기준 체계에 따른 교육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 원장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된 교사와 준비된 기관이 공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훌륭한 영유아교사들이 양성되어 배출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유보통합 진행과정에서의 교사자격과 관련한 의견

김소희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아해뜰어린이집)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교사 집단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육 현장의 교사로서 아래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합니다.

가. 교사 자격 관련과 관련한 의견

1.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은 각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기본적인 모든 자격인정이 필요하며 현장의 원장, 보육교사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보통합 시 교사 자격 및 이수 과목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빠른 시일 정리 되어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유보통합 시 이수해야 할 이수과목 및 이수방법에 일관성을 확보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유아보육, 보육관련학과 교수진들과 교육부의 논의와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유보통합 시 무엇보다도 교사자격에 관해서는 보육현장, 보육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유보통합 시 제시된 자격기준에 따른 이수과목은 특별직무교육, 자격연수 등을 통해 자격기준을 충족토록 충분한 기한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5. 자격에 따라 급여도 차등을 두어야 하며, 자격이 갖추어진 교사와 갖추어지지 않는 교사와의 급여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경

력과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의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6. 어린이집이 유치원 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장이나 교사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했기에 다소 우리 스스로가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보육과 교육은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사립유치원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자격을 지녔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어린이집은 소외되고 사립유치원은 가능하다는 원칙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반드시 두 직군의 교사와 원장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강점을 인정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교사1,2,3급 유치원 정교사1,2급 등 이원화 되어 있는 교사 자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유치원 호봉수 적용처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으로 호봉수 적용을 하고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교사 자격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나. 교사 양성 체제

1. 보육교사 3급 자격 폐지

- 보육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국가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 생겨났던 제도였습니다. 현재, 국가가 교사의 자질을 정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보통합을 실시하면 보육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이나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 교육 습득은 어렵습니다. 이 시기는 관계형성의 시기인 만큼 대면 교육과 실습 등을 통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3급 자격 폐지, 양성교육기관은 재교육기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교사 양성 과정 한 가지 체제로 통합

- 유보 통합 이후에는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의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유아교육과에 흡수하여 유아교육과 과정에 영아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교사 양성과정을 한 가지 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보육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과의 자격과목 이수, 보육교사 양성원에서의 단기 양성과정 등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은 현재 과정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교직과목 이수를 추가 편성하여 [유정 인정] 자격으로 자격명칭이 별도로 제정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차츰 보육교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이후에는 유아교육과를 통해 취득하는 유아정교사 2급 자격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3.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자격의 통합 및 지속적 관리

- 진정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등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는 위와 같은 추가 교육을 통해 자격 일원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재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성이 강화된 충실한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격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학과중심의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전문대, 4년제 등으로 다양하게 양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 정교사를 전문대, 4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성체제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2급 이상 교사에게 교직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하여 교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유치원 정교사도 영아 교육에 대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도 대학에서 필요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교사도 많기에 보육교사만 교직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고 정교사는 추가 이수 과목이 없다는 것은 유보통합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 마련에 교사가 참여하여 교사자격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 자격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영유아들에게도 통합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영유아교사 자격 양성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신경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부모대표)

세계 최저의 출생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율의 문제를 안고 심각한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분쟁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야하는 현재 한국의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미안함과 문제해결 노력에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오랜기간 영유아의 교육, 복지, 돌봄이 낱알이 분절되어 각 기관의 운영체제, 전문가들 간의 장벽, 유아교육과 보육 상호간의 물이해와 불신,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오랜기간 부모, 유아, 전문가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육아와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 나가야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기피와 두려움은 더 커지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벽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을 개정정하고 교육부가 주도하여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영유아와 부모)와 영유아의 교육과 복지, 돌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통합된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자격기준과 양성과정 등에 대한 오늘 토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발제한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방안

이미 현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체제로 오랜기간 운영되어왔고 다양한 규모와 교육내용을 담은 현장교사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의 교(보)육 공백과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면서도 장기적으로 교사의 전문적 역량과 좋은 소양, 근무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겠습니다.

- 우선 현직교사들의 통합자격 취득에 일학습병행이 가능하고, 지역에도 교육지원 기관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교사공백과 혼란이 적기를 바랍니다.

- 모든 영유아(특수아동, 느린학습자, 다문화가정아동, 외국인아동 등)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정 반영이 필요한데, 기존 교육과정에 충분한 비중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생태(숲)교육과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비중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간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공동체(마을,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역량 교육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 가족지원, 의사소통, 지역사회 관계가 통합적으로 이해될수 있어야 합니다.
- 영유아 디지털교육은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영유아 시기에 감각발달과 기본적 심리정서 발달이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우선인데, 초등시기에 접해도 늦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생이해라는 교직 과목은 아동학대 예방이나 영유아에 적합하고 필요한 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사회교육을 좀 더 심화하여 영유아 사회정서교육, 영유아 생활교육 등으로 심화되어도 좋습니다.

2.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방안

- 영유아 양성학과 명칭을 유아교육(학)과로 하여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보다 포괄적인 유아 단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 지역과 수도권의 영유아 교사 수급 상황에 각각 적절하도록 양성학과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숫자나 대학 중심으로 공급 양조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좋은 교사가 현직을 잘 유지하고, 좋은 교사가 자신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사 수급이 안되면 현장 교사의 질적인 부분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고 현장의 고충이 곧 유아와 부모의 고충이 됩니다.
- 유아교육학과의 충원율이 매우 낮아 폐과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영유아교사의 교사직에 대한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여야 학과 진입과 앞으로의 균형적인 전문교사 배출이 되는데, 저출생문제를 사회가 해결하는 동안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학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지역의 중소도시는 지역 소멸에 빠지게 됩니다. 현장교사들의 처우와 직무 안정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유보통합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입니다.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사례와 같이 교사 인건비 지원이 우선 안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보통합 과정에서 자격통합시기를 약 10년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와 대학원과정을 운영할 때, 야간, 주말 등 현직에서 병행할 수있고 현장경력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양성과정(안)

- 유보통합을 계기로 초중등교사와 영유아교사가 동등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교육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하였으나, 현직 보육교사들이 이미 유아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경력이 있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가지 현장에 대한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도 많아, 현장 경력에 대해 충분히 인정과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장경력과 실습을 이증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보통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이 주과제인 시기에 교사교육으로 피로감과 혼선만 초래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교사(재)교육 업무로 인해 대학들은 불필요하게 인력 확대로 교수진의 교육 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현재의 보육현장은 오히려 이중적인 고충(교사 이탈, 현직 교사의 피로)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가칭) 영유아 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 유치원근무경력과 어린이집근무경력, 어린이집 현직교육(2급,1급승급, 원장자격) 이수 내용과 시간 등을 수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현직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연수 기간은 현장 경력과 학위과정(석사, 박사 등) 경력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현장의 보육공백(15일의 원장 연수?)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원 50명이상, 운영경력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두고 현직 유치원 원장 직무교육 이수시간 30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교육이 과연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교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인지-유아와 부모들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부 중심 통합이 이러한 의미의 통합자격 일원화는 아니므로 어린이집현장과 유치원현장의 현실과 보충할 과제를 핵심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해결해야 할 일이다. 통합원감자격과정도 현직원감 이수시간 30시간에 비해 100시간은 과도하다. 통합 원감자격의 필요조건으로 1급 통합교사 자격 취득 후 전임교육 경력 3년이상이면 보육현장에서 혼란과 고충이 생길 수 있으므로, 1급통합교사 자격과 현장경력6년 또는 9년이상으로 경력기간 인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적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용 어린이집(직장,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공보육기관 선호) 교직원에게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도 이용하는 부모와 영유아들이 함께 겪어야하는 어려움입니다.

현장에서 교육기회와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교육연수에 따른 대체교사지원이 평상시에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유보통합과정에서 장벽과 보육현장의 고충만 부분은 없는지 교육부에서 잘 살펴볼 문제이며, 교사교육을 온전히 대학이 결정할 문제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현장의 부담, 변화과정에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영유아 입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지역 어린이집은 외국인아동이 비율이 많아지고, 교사 구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반별 영유아 정원수가 좀 더 적어지면 좋겠고, 반구성에서 3-5세 혼합연령(발도르프교육)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여건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자녀나 손자녀)을 함께 보내고 싶어도 어린이집의 여건 변화로 먼곳으로, 혹은 두 개 기관으로 보내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교사들이 본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안정화와 지역현실도 잘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호남·제주권

